

2020 - 1889

(, 가
) () ()
- 171 - 2 () -

1.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19-1783호(2019.11.21.)로 열람공고한 ‘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, 특별계획구역가능지④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수립)결정(변경)(안)’에 대하여 202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0.10.28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구로구청장

I. 재열람사유 :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 반영에 따른 계획(안) 변경

II. 열람 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(2020. 11. 26. ~ 12. 10.)

III.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: 구로구청 도시계획과(☎02-860-2957)

IV. 도시관리계획 (개봉역지구단위계획, 특별계획구역지정 및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 없음)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134,212.0	-	134,212.0	100.0	
주거 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(주1)	125,406.0	감) 2,227.1	123,178.9	91.8	
	준주거지역	8,806.0	증) 2,227.1	11,033.1	8.2	

주1) 특별계획구역 가능지가 지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계획(공공기여 포함)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함